

제2023-74호 2023년 8월 11일(금)

人



보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시정지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기 타

0	여수시	조례	제1931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0	여수시	조례	제1932호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5
0	여수시	조례	제1933호	여수시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0	여수시	조례	제1934호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0	여수시	조례	제1935호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27
0	여수시	조례	제1936호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31
0	여수시	조례	제1937호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	37
0	여수시	조례	제1938호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39
0	여수시	조례	제1939호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0	여수시	조례	제1940호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1
0	여수시	조례	제1941호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58
0	여수시	조례	제1942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9
0	여수시	조례	제1943호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80
0	여수시	조례	제1944호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	89
0	여수시	조례	제1945호	여수시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93

회				
람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 월 // 일

여수시장 205/1000

여수시 조례 제1931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31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신설 2020. 3. 9.)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지 급 대 상	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0,000원

※ 이 경우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2057

여수시 조례 제1932호 붙임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32호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여수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근로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공 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 3.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 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 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 운영
 -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자기가

여수시 조례 제1933호 붙임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33호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실무위원은"을 "실무조정위원회"로,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 ① 위원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사전검토
- 2.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 3. 시 주관 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행사 성격·규모·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 5.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 및</u>	제1조(목적)
<u>안전관리기본법」</u> 에 따라 여수	안전관리 기본법」
시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3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 주관 축제 (「공연법」의	<삭 제>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	
리계획 심의	
5. 민간 •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u><삭 제></u>
의 행사 성격, 규모, 참여인	
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u>심의</u>	
<u>6</u> .· <u>7</u> . (생 략)	<u>4</u> .⋅ <u>5</u> .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삭 제>
심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한다.	
<u>1. 시장</u>	

- 2. 부시장
- 3. 여수교육지워청교육장
-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5. 여수소방서장
- 6. 여수경찰서장
- 7.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 8. 국립여수검역소장
- 9. 한국전기안전공사여수지사 장
-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 부지사장
- 1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

⑤ (생략)

제8조(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 제8조(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원회에 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회)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기원회) ① 위원회에 「재난 및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인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조정하는 여수시 안전 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 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사전검 토
- 2.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

- ② <u>실무위원회</u>의 위원장은 행정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u>실무위원</u> 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 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 에서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선임 한다.
- ③ <u>실무위원회</u>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④ <u>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u> 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소집한다.

<u>리</u>
3. 시 주관 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
리계획 심의
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의 행사 성격·규모·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
의
5.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u>실무조정위원회</u>
실무조정위원은 -
<u> </u>
③ 실무조정위원회
·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
무조정위원회
··

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위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 실무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 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 실무조정위원회-----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 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등) 위원회 또는 실무 제12조(수당등) ------ 실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조정위원회-----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 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u>실무위원회</u>의 경우도 또 한 같다.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② (생 략)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결과도 제③ 실무조정위원회--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3조(회의록)		
			- <u>실무</u>
	조정위원회		 .
제	14조(회의결과의	통보)	1.2
	(현행과 같음)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생활문화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기계기

여수시 조례 제1934호 붙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34호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를 "별도 수강료를 별표 1 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이용료"를 "이용료 및 수강료"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10시간 이하	10,000원
교육·문화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15,000원
프로그램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20,000원
	30시간 초과	30,000원

- ※ 1명당 1개월 기준
-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개월별로 기준을 적용함.
-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함.

[별표 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	감 면 비 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1.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 ※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 감면비율 적용함.
- ※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3]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1. 이용료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 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반환

2. 수강료

	반 환	반 환 금 액	
따라 이용 2. 천재지변 불가능할 3. 프로그램	자체의 행사 5 용이 취소 또는 등 불가항력 경우 이 폐지된 경우 습을 할 수 없게		
	수강료	수강 개시일 전 총수강시간의 1/3이	전액 반환 납부한 수강료의
5. 수강생의	-정으로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사정으로 반환을		수강 개시일 전	전액 반환
요청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수강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 ※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앞면>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신청인(단체)	생년월일(개인) (□남, □여)			
신청인 정 보	대 표 자	연락처/E-mail			
	신청인(단체) 주 소				
	구 분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신 청 내 용	사용시설	□ 연습실 1 □ 연습실 2 □ 연습실 3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프로그램실 □ 학습실(세미나실) □ 다목적홀 □ 콘텐츠제작실 1 □ 콘텐츠제작실 2 □ 스튜디오			
	사용기간	년 월 일 00:00부터 년 월 일 00:00까지			
	사용인원	운영진: 명 / 참가자: 명 / 총인원: 명			
	사 용 료				
세 부	반 입 물	-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내 용	사용내용	-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첨 부	첨 부 동아리 소개서 / 사용자 명단 각 1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여수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 이용	제8조(이용료 등)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	
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u>별도</u>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
	<u>다.</u>
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시	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장은 별표 2에 따라 <u>이용료</u> 의 일	이용료 및
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u>수강료</u>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시장은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u>이용료</u> 의 전부 또는 일부	<u>이용료 및 수강료</u>
를 반환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205기가

여수시 조례 제1935호 붙임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1부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 ·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 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 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 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사업
 - 6.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275기 / 100

여수시 조례 제1936호 붙임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 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상점 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 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 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제2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기	7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m²,	건물 연면	적:	m²	, 영업장 면적:	m³,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호	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Š 0	동,	층	동	, 충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닌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료 :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골목형상 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225기가

여수시 조례 제1936호 붙임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37호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마트도 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22기/20

여수시 조례 제1938호 붙임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 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운영이 용이 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하다.

-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수 있다.
-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 장한다.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 · 운영
 -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 유영
 -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 제8조(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운영인력을 두거나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 보급
 -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 3. 여수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여수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다.

-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3명 이내
- 다. 사업시행자
- 라.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 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 사.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 2. 위원의 사망 또는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
 -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21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205기까지 1

여수시 조례 제1939호 붙임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 제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
	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
	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제10조(금지행위)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
	지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 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제12조 (생 략)

제13조·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이100

여수시 조례 제1940호

붙임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40호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 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 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화학물질 등의 배관, 도로, 방호벽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 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4. "관계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 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경,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 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

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13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 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 2.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3.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 4.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 5.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 분야 정보 공유
- 6.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
- 7. 여수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 관리 및 경보제 운영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④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료의 제출) 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각 호의 시설물 소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시장에게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상배관(화학, 고압가스, 위험물, 송유, 스팀 등)
 - 2. 지하배관(화학, 고압가스, 위험물, 송유, 스팀 등)
 - 3. 지상배관 관련 시설물(파이프랙, 오버브릿지)
 - 4. 지하배관 인입구조물(박스컬버트)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적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가공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에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 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시설물의 소유, 관리 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 1. 여수산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대응방법에 대한 협의
- 2. 여수산단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최신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
- 3. 여수산단 시설물 환경·안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확충 등에 대한 협의
- 4. 3D GIS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 및 논의
- 5. 여수산단 화경 · 안전 관제 분야 개선방안 협의
- 6.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 분야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 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관련 업무 부서장
 - 2. 여수국가산업단지 합동방제센터 환경관련 업무 부서장
 - 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 및 안전관련 종사

- 자 또는 전문가
 -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나. 여수상공회의소
 - 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협의회
 - 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 마.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술부장협의회
 - 바. 재난안전 관련 전문기관
- 사. 화경 관련 전문기관
- 5. 위탁운영 수행기관 담당자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 월 // 일

여수시장 게장

여수시 조례 제1941호

붙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41호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여수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여수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여 수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화학물질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변경
 - 2. 제18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점검
 -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 1. 당연직 위원
 - 가. 화학물질업무 담당국장
 - 나. 재난 ·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여수소방서 화학사고업무 담당부서의 장
- 다. 화학 · 환경 ·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노동단체 대표 또는 산업계·노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마.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 가
-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危害) 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

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여수시에서 취급되는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 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 감 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인력·장비 등의 동 원방법
 -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 건·절차, 대피장소의 관리·점검 및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 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의 출입통제방법
 - 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과 긴급구 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 7.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1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

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 2.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 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疏散)계획의 보 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疏散)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14.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

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5.

- 제18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동반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 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후력을 실시할 수 있다.

17.

- 제20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
 -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기25기까군

여수시 조례 제1942호 붙임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42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여수시민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 3. "무장애 관광지" 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 4. "지속가능관광"이란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지의 주민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 6. "관광사업자 단체" 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 을 말하다.
- 7. "문화관광해설사" 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 8. "크루즈"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적크루즈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2. 국내 · 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 3. 국내 · 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 7. 관광자원 보호 · 개발 · 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스마트관광산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14.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야간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 5.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 6.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 사업
 - 7.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 8. 사진 · 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 9.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 10.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지원 사업
 - 11.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 13.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14. 야간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 1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 1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사업자,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 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 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 광협의회에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

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분야별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 · 단체 ·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19.

- 제13조(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판매 사업
 - 2. 시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의 기획ㆍ추진 사업
 -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시 안에 있는 관광시설 및 관광지 등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 가. 시 안에 있는 다음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영업소
 - 2) 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영업소

- 3) 「농어촌정비법」제85조에 따라 관광농원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 4)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
-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 7) 그 밖의 야영장 또는 휴양시설

나. 크루즈선 또는 항공기,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 4. 그 밖에 시 관광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정치 · 종교 행사의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

- 제14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관광객에 대한 지역관광의 홍보 및 안내
 - 2. 국내 · 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제공
 - 3. 그 밖에 지역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
 -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이하 "해설사"라 한다)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따라 최

종 선발한다.

- 제16조(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 2. 근무복 등 구입비
 -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 4. 상해보험료
 -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 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공무워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크루즈서포터즈) ① 시장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하 "크루즈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관광안내소 운영

-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사업
- 4. 국내 · 외 관광 관련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운영
- 5. 온 · 오프라인 관광마케팅
- 6.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 7. 순환관광버스 등 시티투어 운영
- 8. 관광기념품 판매
- 9.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 10. 문화관광해설사 및 크루즈서포터즈 관리 업무
-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정한 위탁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205기까 민이

여수시 조례 제1943호 붙임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 2. "해양포유동물"이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3. "상괭이"는 법에 따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괭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해역에서 상괭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2장 상괭이보호위원회의 운영

- 제4조(상괭이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에 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괭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1. 상괭이 서식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 2. 상괭이 조사 · 연구 ·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3. 상괭이 보호 ·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상괭이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 5. 상괭이 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 6. 상괭이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 7.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 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 게 구성하여야 한다.
 - 1.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
 - 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 5.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라한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지원

- 제13조(상괭이 조사·관찰·연구)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등을 조사·관찰·연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의 시 해역 도래 개체 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 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관련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 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4조(상괭이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 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상괭이 출몰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

- 육 ·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상괭이 전시 및 교육·홍보관은 상괭이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 1. 상괭이 생태·환경 교육·체험 및 교재의 개발·보급
 - 2. 상괭이 관련 생태 · 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 3. 상괭이 관련 생태·환경 모니터링
 - 4. 상괭이 관련 생태 · 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5. 상괭이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 6. 상괭이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 · 관리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 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있다.
 - ③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법 제1 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

양보호생물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의 혼획방지) 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해역에 도래하는 상괭이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개발・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상괭이 보호 관리사업

- 제17조(상괭이 보호계획) 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상괭이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 2. 상괭이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 3. 상괭이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4. 상괭이 도래지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 5. 그 밖에 상괭이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상괭이 서식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시장은 상괭이 서식환경 오

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읍·면·동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

- 1. 오수 및 하 · 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 2.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3. 그물망 훼손 등 어업 시 상괭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 4. 그 밖에 상괭이 서식 환경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1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상괭이 도래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상괭이에 대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21조(국내·국제협력)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 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 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수시장 2057/1000 11

여수시 조례 제1944호 붙임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1부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관공선"이란 여수시 공유재산 중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여수시가 운영·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 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 갑판원, 기관원, 통신사를 말한다.
 - 3. "승선자" 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공선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선을 운영 ·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선 : 여수시 관할 해역 및 섬 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
- 2.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 3. 정화선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적조 방제 활동 등

- 제6조(운영·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공선 운영·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 2.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
 - 3. 그 밖에 관공선 운항 ·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행정선 보유 면
- 2. 어업지도선 : 여수시 수산경영과
- 3. 정화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 2. 관공선의 건조, 매각, 폐선 등 업무
- 3. 관공선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
- ③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수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1. 여수시 관·과·소, 읍·면·동 행정목적
 - 2.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 3.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① 시장은 관공선 운항시 「선박직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 ①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조선·해 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 월 // 일

여수시장 205기계 11

여수시 조례 제1945호 붙임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선 ·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해양 신산업"이란 친환경 선박의 제조, 해양바이오 산업, 첨단해양장비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 "해양"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의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4.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 5. "첨단해양장비산업"이란 무인 해양장비 등 첨단해양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조선ㆍ해양 신산

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제5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조선·해양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조선 · 해양 신산업의 환경변화
 - 2.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실태와 전망
 - 3.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4.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조선 · 해양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선·해양신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 4. 그 밖에 조선 ·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선·해양 신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신산업에 관한 지역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해양 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조선·해양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조선 · 해양산업 업무담당 국장
 - 2. 위촉 위원 :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조선·해양산업 분야 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조선ㆍ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3장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 지원

- 제12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 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 외하다.
 - 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 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3.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4.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제15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의 시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조선·해양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과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조선·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조선·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조선·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축제 또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조선·해양 신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을 위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1. 조선·해양신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 2. 조선ㆍ해양 신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 3. 그 밖에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